

	사회봉사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33
		제정일자	2024.04.01.
		개정일자	
		개정차수	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 (사회봉사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학생성공처 산하 사회봉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
1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사회봉사 교과목·마일리지제 운영
4. 사회봉사활동 인증 및 확인서 발급
3. ONE-STOP SERVICE 운영
4. 그 밖에 센터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4조(직원) 센터에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센터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사회봉사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6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.